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6. 8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(안 별표3)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및 [별표9] 특수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보수·수당업무처리지침(2003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3]

장려수당 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80,000원
②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250,000원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개정이유
[별표3] 장려수당 지급구분표		[별표3] 장려수당 지급구분표		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처우 개선
지 급 대 상	지 급 액	지 급 대 상	지 급 액	
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80,000원	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80,000원	
②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50,000원	②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250,000원</u>	